

3 교육 · 과학기술 분야

개정 전	개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§46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면율) 기업규모별 차등 및 신성장 기술에 따른 추가감면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기본</th><th>신성장·원천 기술 (+15%p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기업</td><td>취·재 35% (과밀억제권역外)</td><td>취·재 50%</td></tr> <tr> <td>일반기업</td><td>취·재 35%</td><td>취·재 50%</td></tr> <tr> <td>초기중견</td><td>취·재 50%</td><td>취·재 65%</td></tr> <tr> <td>중소기업</td><td>취 60% 재 50%</td><td>취 75% 재 65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추징요건) 1년(신·증축 대수선의 경우 2년)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시,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3년 이내 신성장기술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연구소 폐쇄 및 타 용도 사용시 추징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	기본	신성장·원천 기술 (+15%p)	대기업	취·재 35% (과밀억제권역外)	취·재 50%	일반기업	취·재 35%	취·재 50%	초기중견	취·재 50%	취·재 65%	중소기업	취 60% 재 50%	취 75% 재 65%	<p>☞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, 재설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면율) 기업규모별·지역별 차등 및 신성장·국가전략기술에 따른 추가감면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기본</th><th>신성장 및 국가전략 기술 (+15%p)</th></tr> <tr> <th></th><th>수도권</th><th>비수도권</th><th>수도권</th><th>비수도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기업</td><td>감면 종료</td><td>취·재 35%</td><td>-</td><td>취·재 50%</td></tr> <tr> <td>그 밖의 기업</td><td>취·재 30%</td><td>취·재 45%</td><td>취·재 45%</td><td>취·재 60%</td></tr> <tr> <td>중소기업</td><td>취·재 45%</td><td>취·재 60%</td><td>취·재 60%</td><td>취·재 75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추징요건) 정당한 사유 없이 1년(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)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시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3년 이내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연구소 폐쇄 및 타 용도 사용시 추징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 		기본	신성장 및 국가전략 기술 (+15%p)	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	대기업	감면 종료	취·재 35%	-	취·재 50%	그 밖의 기업	취·재 30%	취·재 45%	취·재 45%	취·재 60%	중소기업	취·재 45%	취·재 60%	취·재 60%	취·재 75%
	기본	신성장·원천 기술 (+15%p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기업	취·재 35% (과밀억제권역外)	취·재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기업	취·재 35%	취·재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기중견	취·재 50%	취·재 6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	취 60% 재 50%	취 75% 재 6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본	신성장 및 국가전략 기술 (+15%p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기업	감면 종료	취·재 35%	-	취·재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기업	취·재 30%	취·재 45%	취·재 45%	취·재 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	취·재 45%	취·재 60%	취·재 60%	취·재 7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② 한국환경공단 직접사용 부동산§47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 면 율) 취득세·재산세 25%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현행 3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 면 율) 취득세·재산세 25%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③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§47의4></p>	<p>☞ 감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면대상) 건축·대수선을 통해 스프링클러 (간이스프링클러 포함)를 설치한 숙박시설 ※ 非의무대상 숙박시설 限 (감 면 율) 취득세 100%, 재산세 100%(2년, 이후3년간 50%) * 최소납부세제 적용 (일몰기한) 2028.12.31.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